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이윤석

전화 033-660-4304/ 팩스 033-660-4342

## 보도자료

2021. 12. 15.(수)

### 제 목 **A공사 직원의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(지청장 정희원)은 강릉시 택지개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**A공사 부장 甲(3급)**을 **부패방지법위반**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하고 뇌물을 받은 **A공사 과장 乙(4급)** 및 다운계약서로 A공사 전매승인을 받아낸 **지역협동조합 간부 등 8명**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A공사 직원 2명 및 협동조합 간부 1명이 '15. 12.~'16. 12. 업무상 취득한 **비밀을 이용하여** 약 2억 4,000만원 상당의 강릉시 소재 **토지 매입**
  - A공사 직원 8명 및 협동조합 간부 1명이 '16. 2. **다운계약서**를 이용하여 공사의 전매승인을 받아 **A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업무방해**
  - 乙은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대가로 '16. 2. 甲으로부터 **700만원** 수수
-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 처분 이익은 모두 **몰수·추징 보전 조치** 되었으며, 유죄 확정 시 **전액 국고 귀속 예정임**
- 향후에도 강릉 검찰은,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**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**하고 **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**할 예정임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[죄명]
1	甲(56세), 現 A공사 직원(3급), 구속	<p>■ 강릉시 흥제동 소재 토지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5. 6.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강원도 소유의 강릉시 흥제동 소재 8필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함 [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]</li> <li>· '15. 8. 위 공문에 속은 강원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8필지를 A공사에 매도하게 함 [위계공무집행방해]</li> <li>· '15. 8. A공사로 하여금 개발가치가 없어 규정상 매수해서는 안 되는 위 8필지를 약 2억 1,500만 원에 매수하게 함 [업무상배임]</li> <li>· '15. 12. 丙, 丁과 공모하여, A공사가 위 8필지를 매수하여 연접한 필지가 정형화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위 8필지 중 3필지(329㎡)를 9,700만 원에 취득함 [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]</li> <li>· '16. 12. 위 업무상비밀을 이용하여 위 8필지 중 5필지(489㎡)를 1억 4,400만 원에 취득함 [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]</li> </ul> <p>■ 강릉시 유천동 소재 토지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6. 2. 丙, 丁, 戊, 己, 庚, 辛, 壬, 癸과 공모하여, 사실은 강릉시 유천동 소재 1필지를 19억 8,000만 원에 전매함에도 마치 A공사의 최초 공급가(18억 1,000만 원)와 같은 금액에 전매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전매승인을 받음 [업무방해]</li> <li>· '16. 2.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해 준 대가로 A공사 소속 乙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함 [뇌물공여]</li> </ul>
2	乙(56세), 現 A공사 직원(4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6. 2. 전매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해 준 대가로 甲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음 [부정처사후수뢰]</li> </ul>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[죄명]
3	丙(56세), 現 A공사 직원(3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5. 12. 甲과 공모하여, A공사가 위 8필지를 매수하여 연결한 필지가 정형화될 수 있다는 <b>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</b> 위 8필지 중 <b>3필지(329㎡)</b>를 9,700만 원에 취득함 [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]</li> <li>• '16. 2. 戊, 己, 庚, 辛, 壬, 癸과 공모하여, 사실은 강릉시 유천동 소재 1필지를 19억 8,000만 원에 <b>전매함에도 마치 A공사의 최초 공급가(18억 1,000만 원)와 같은 금액에 전매하는 것처럼</b>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여 <b>전매승인을 받음</b> [업무방해]</li> </ul>
4	丁(55세), 現 B조합 간부	
5	戊(56세), 現 A공사 직원(3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6. 2. 甲, 丙, 丁과 공모하여, 사실은 강릉시 유천동 소재 1필지를 19억 8,000만 원에 <b>전매함에도 마치 A공사의 최초 공급가(18억 1,000만 원)와 같은 금액에 전매하는 것처럼</b>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여 <b>전매승인을 받음</b> [업무방해]</li> </ul>
6	己(51세), 現 A공사 직원(3급)	
7	庚(56세), 現 A공사 직원(2급)	
8	辛(47세), 現 A공사 직원(3급)	
9	壬(47세), 前 A공사 직원(3급)	
10	癸(55세), 現 A공사 직원(3급)	

## II

### 수사 경과

- '21. 4. 강원도경찰청, 수사착수
  - 수사팀 검사가 사경과 상시 협의, 주요 진행상황 공유 및 각종 영장에 대한 신속 검토 및 보완 등 적극 협력
- '21. 9. 16. 甲 구속영장 발부(乙 구속영장 법원 기각)
  - 수사팀 검사가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증거관계 및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의견서 제출
- '21. 9. 23.~28. 甲 등 10명에 대한 기소 전 몰수·추정보전청구, 인용
- '21. 10. 12. 甲 구속 기소, 乙 불구속 기소
- '21. 12. 14. 丙 등 8명 불구속 기소
  - 추가 압수물 분석, 다수 관계자들 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특정하고,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범행 규명

## III

###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, A 공사 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및 뇌물 수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였음
-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8필지 중 현재 甲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는 몰수보전 조치가 되었고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며, 이미 매도한 3필지의 매도대금,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전매차익 및 수뢰액은 추정보전 조치 되었음
- 향후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임 ☒